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안 번호	1099
----------	------

제출일자: 2019. 8. .

제출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예정지인 반여2·3동 내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현장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 증진

2. 주요골자

가. 취득(처분)재산 현황

(단위 : m², 천원)

사업명	소재지	건축규모 (면적)	추정금액	취득시기	주관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반여동 1603-1	지상2층 (278.4m ²)	1,110,000	2019	도시재생 추진단

나.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해운대구 좌동 반여동 1603-1 ☞ (전)반여3동 우체국사
- 2) 사업규모 : 대지 310m², 건물 278.4m²(연면적,2층)
- 3) 사업기간(예정) : 2019. 9월 ~ 12월
- 4) 총사업비 : 1,110백만원

다. 추진상황

1) 현재까지 추진사항

- 가) 2019. 4. : (전)반여3동 우체국사 매입 검토보고
- 나) 2019. 5. : 부산지방우정청의 매각보류 의견회시
- 다) 2019. 6. :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 원안 가결

2) 향후 추진 계획(안)

- 가) 2019. 8. : 2019년 2차 추경 시 소요예산 확보
- 나) 2019. 9. : (전)반여3동 우체국사 매입
- 다) 2020. 1.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3. 관계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4. 위치 및 현황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계	토지				1	310 (1)	1,017,000	1	310 (1)	1,017,000	
		건물				1	278.4 (1)	93,000	1	278.4 (1)	93,000	
		기타										
	1. 매 입	토지				1	310 (1)	1,017,000	1	310 (1)	1,017,000	
		건물				1	278.4 (1)	93,000	1	278.4 (1)	93,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계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1	대	반여동 1603-1	310m ² (1)	1,017,000	2019.9.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2	건물	반여동 1603-1	278.4m ²	93,000	2019.9.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안 번호	1100
----------	------

제출일자: 2019. 8.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제안이유

○ 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 지역 특성상 협소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린이놀이공간 확충의 주민욕구 증가,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 투자는 집중되는 반면, 감소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시설 투자 부족, 기본적인 아동의 놀권리 보장할 공간 조성 필요
- ▷ 반여동 지역구 시의원 관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예산 확보, 해당지역 주민의견 반영한 야외 어린이놀이시설 조성하여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2018.11월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 되었으나, 부지매입비 및 개략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등 계획 변경(총사업비9억→11억)에 따라 2019.8월 공유재산심의 취득사항 변경 <관리계획(의회승인)수립 비대상(10억원 미만)→대상(10억원이상)>

2. 주요골자

가. 취득(처분)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소재지	부지면적(대지)	추정금액	취득시기	주관부서
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반여동 1291-505 1291-503	304m ²	1,100,000	2019.9 ~2020.5	가족복지과

나. 사업개요

- 1) 위 치 : 반여동 1291-505, 1291-503번지
- 2) 부지면적 : 304m²
- 3) 조성내용 : 야외어린이놀이터(메인놀이1점, 보조놀이2점, 그늘쉼터, 녹지공간)
- 4) 사업기간(예정) : 2019. 9월 ~ 2020. 5월
- 5) 총사업비 : 11억원(시비 7억, 구비 2억, 기타 재원확보계획 2억)
(공사비 2.7, 부지매입비 8, 설계·기타 3)

※ 공간배치 등은 설계용역시 주민의견 수렴 후 적의 조정

다. 추진상황

1) 현재까지 추진사항

- 가) 2018. 11. :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 나) 2018. 12. : 놀이시설 조성 부지 공유재산 심의(당초) 및 시비(7억) 확보
- 다) 2019. 2. : 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야외) 조성 추진계획 수립
- 라) 2019. 3. :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마) 2019. 8. : 공유재산 심의(변경)

2) 향후 추진 계획(안)

- 가) 2019. 9. : 부족사업비 확보(2019. 제2회 추경 등), 부지 매입(감정평가액 약8억)
- 나) 2019.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다) 2019. 11. : 건물 철거
- 라) 2020. 2. : 야외어린이놀이터 공사 착공, 2020. 5. : 준공

3. 관계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4. 위치 및 현황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1	304 (2)	800,000	1	304 (2)	800,000	
		건물										
		기타				1	304 (1)	300,000	1	304 (2)	300,000	
	1. 매 입	토지				1	304 (2)	800,000	1	304 (2)	800,000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304 (2)	300,000	1	304 (2)	300,000	늘어터 조성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1	토지	반여동 1291-505 1291-503	304 (2)	800,000	2019. 9.	야외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토지(지장물 포함)매입	매입
2	야외 놀이터	반여동 1291-505 1291-503	304 (2)	300,000	2020. 5.	야외어린이 놀이터조성	설치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의안 번호	1099
----------	------

제243회 임시회
2019. 8.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재무과 소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미경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예정지인 반여2·3동 내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처분)재산 현황

(단위 : m², 천원)

사업명	소재지	건축규모 (면적)	추정금액	취득시기	주관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반여동 1603-1	지상2층 (278.4m ²)	1,110,000	2019	도시재생 추진단

나.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해운대구 좌동 반여동 1603-1 ☞ (전)반여3동 우체국사
- 2) 사업규모 : 대지 310m², 건물 278.4m²(연면적,2층)
- 3) 사업기간(예정) : 2019. 9월 ~ 12월
- 4) 총사업비 : 1,110백만원

다. 추진상황

1) 현재까지 추진사항

- 가) 2019. 4. : (전)반여3동 우체국사 매입 검토보고
- 나) 2019. 5. : 부산지방우정청의 매각보류 의견회시
- 다) 2019. 6. :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 원안 가결

2) 향후 추진 계획(안)

- 가) 2019. 8. : 2019년 2차 추경 시 소요예산 확보
- 나) 2019. 9. : (전)반여3동 우체국사 매입
- 다) 2020. 1.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 나. 첨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4.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예정지인 ‘반여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장지원센터 등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이상의 재산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 취득 공유재산은 반여동 1603-1번지 대지 310㎡, 건물 연면적 278.4㎡ 규모에 (전)우체국사로 사용된 건물로, 반여2·3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여2·3동 내의 부지 및 건물은 정책이주지 특성상 규모가 협소하고 한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로 구성되어 매입하기 쉽지 않으나, 해당 우체국사는 반여3동 도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은데다 올해 초에 공실되어 보수할 부분이 적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현장지원센터 등 거점시설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여3동 우체국사 매입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참고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4. 위치 및 현황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계	토지				1	310 (1)	1,017,000	1	310 (1)	1,017,000		
		건물				1	278.4 (1)	93,000	1	278.4 (1)	93,000		
		기타											
	1. 매 입	토지				1	310 (1)	1,017,000	1	310 (1)	1,017,000		
		건물				1	278.4 (1)	93,000	1	278.4 (1)	93,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1	대	반여동 1603-1	310m ² (1)	1,017,000	2019.9.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2	건물	반여동 1603-1	278.4m ²	93,000	2019.9.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의안 번호	1100
----------	------

제243회 임시회
2019. 8.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재무과 소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미경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지역특성상 협소한 주거환경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반여2동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취득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018.11월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 되었으나, 부지매입비 및 개략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등 계획 변경(총사업비9억→11억)에 따라 2019.8월 공유재산심의 취득사항 변경
<관리계획(의회승인)수립 비대상(10억원 미만)→대상(10억원이상)>

2. 주요내용

가. 취득(처분)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소재지	부지면적	추정금액	취득시기	주관부서
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조성	1291-505 1291-503	304㎡	1,100,000	2019.9 ~2020.5	가족복지과

나. 사업개요

- 1) 위 치 : 반여동 1291-505, 1291-503번지
- 2) 부지면적 : 304㎡
- 3) 조성내용 : 야외어린이놀이터(메인놀이1점, 보조놀이2점, 그늘쉼터, 녹지공간)
- 4) 사업기간(예정) : 2019. 9월 ~ 2020. 5월
- 5) 총사업비 : 11억원(시비 7억, 구비 2억, 기타 재원확보계획 2억)
(공사비 2.7, 부지매입비 8, 설계·기타 3)

※ 공간배치 등은 설계용역 시 주민의견 수렴 후 적의 조정

다. 추진상황

1) 현재까지 추진사항

- 가) 2018. 11. : 어린이놀이기구 개선 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 나) 2018. 12. : 놀이기구 조성 부지 공유재산 심의(당초) 및 시비(7억) 확보
- 다) 2019. 2. : 반여2동 어린이놀이기구(야외) 조성 추진계획 수립
- 라) 2019. 3. :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마) 2019. 8. : 공유재산 심의(변경)

2) 향후 추진 계획(안)

- 가) 2019. 9. : 부족사업비 확보(2019. 제2회 추경 등), 부지 매입(감정평가액 약8억)
- 나) 2019.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다) 2019. 11. : 건물 철거
- 라) 2020. 2. : 야외어린이놀이기구 공사 착공, 2020. 5. : 준공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 나. 첨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4.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역특성상 협소한 주거환경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반여2동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이상의 재산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 반여2동은 2019.1월 현재 최근 5년동안 총인구 14%감소에 비해 아동인구는 40%이상 감소하여 아동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어린이 놀이시설 취득 공유재산은 반여동 1291-505번지의외 1필지에 부지면적 304㎡ 규모로 부지매입비 포함하여 공사비 총 11억원으로, 2018.12월 시비 7억은 확보되고 2019.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편성 요구한 상태이나, 나머지 2억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아동놀이시설 건립 관련 국비신청이나 공모신청 등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은 지속적인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조성되는 것인 만큼 공간배치 등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다수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참고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4. 위치 및 현황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붙임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2	304 (2)	936,000	2	304 (2)	966,000	
		건물				2	259.16 (4)	134,000	2	259.16 (4)	134,000	
		기타				1	304 (2)	30,000	1	304 (2)	30,000	
	1. 매 입	토지				1	304 (2)	725,000	1	304 (2)	725,000	
		건물				1	259.16 (4)	75,000	1	259.16 (4)	75,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1	304 (2)	211,000	1	304 (2)	211,000	놀이터 조성
		건물				1	259.16 (4)	59,000	1	259.16 (4)	59,000	철거
		기타				1	304 (2)	30,000	1	304 (2)	30,000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합계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1	토지	반여동 1291-505 1291-503	304 (2)	725,000	2019. 9.	야외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토지 매입	매입
2	건물	반여동 1291-505 1291-503	259.16 (4)	134,000	2019. 9.	건물 매입, 철거후 야외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매입 후 철거
3	야외 놀이터	반여동 1291-505 1291-503	304 (1)	241,000	2020.5	야외어린이 놀이터조성	설치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2
----------	------

제출연월일 : 2019 . 8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가 2013. 3. 11. 제정되어 제5조(기본계획수립)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 나. 2016. 2.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본계획수립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삭 제></p>

의안 번호	1092
----------	------

제243회 임시회
2019.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인문학도서관 소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미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가.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가 2013. 3. 11. 제정되어 제5조(기본계획수립)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 나. 2016. 2.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본계획수립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검토결과

- 「해운대구 인문학 조성 조례」 제5조에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6.2.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본계획수립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상위 법률과 대통령령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상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끝.

【참고 법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자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④ 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9
----------	------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의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국 산하 부서조정, 명칭 변경, 분장사무 일부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안 제2조, 제3조, 제9조)

○ 미래도시국

나. 부서(단) 폐지(안 제2조, 제3조, 제6조)

○ 도시재생추진단

다. 국 명칭변경(안 제10조)

○ 교통안전도시국 → 교통건설국

라. 국 소관부서 조정(안 제8조(중전의 제9조), 제9조, 제10조)

○ 미래도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 미래도시국 이동

마. 국 분장사무 변경(안 제8조(중전의 제9조), 제9조, 제10조)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무, 도시디자인, 가로·광고물 정비 및 관리, 공동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하천·구거·공유수면(구거), 하수관리,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재난·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 청소, 자원재활용,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 감량에 관한 사무 → 미래도시국 이관

바. 부서(과) 명칭변경(안 제9조)

○ 도시재생추진단 → 도시재생과, 미래도시과 → 도시관리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인사부서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국장 및 실장·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 등)”을“(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실장·담당관·단장·과장”을“실장·담당관·과장”으로,“실·담당관·단·과”를“실·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실·담당관·단 및 국의 설치)”를“(실·담당관 및 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도시재생추진단, 행정지원국”을“행정지원국”으로,“교통안전도시국”을“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미래도시국에 두는 과) ① 미래도시국에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미래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무
2. 도시디자인, 가로·광고물 정비 및 관리
3. 공동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4. 하천·구거·공유수면(구거), 하수관리

5.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6. 재난·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
7. 민방위
8. 청소, 자원재활용,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 감량
9.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무의 지도·감독

제8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자원순환과, 민원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교통안전도시국에 두는 과)”를“(교통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안전도시국에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미래도시과”를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하천·구거·공유수면·상수·하수·지하수”를 “공유수면(바다), 지하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래도시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통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안전도시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통안전도시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통안전도시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시재생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 및 실장·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실장·담당관·단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담당관·단·과의 사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 ----- ----- 실장·담당관·과장 ----- ---- 실·담당관·과-----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실·담당관·단 및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도시재생추진단,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을 둔다.</p>	<p>제3조(실·담당관 및 국의 설치) ----- ----- -- 행정지원국----- ----- 미 래도시국, 교통건설국----- -----.</p>
<p>제6조(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p>	<p><삭 제></p>
<p>제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생략)</p>	<p>제6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제8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p>	<p>제7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p>

(생략)

<신설>

제9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

(현행과 같음)

제9조(미래도시국에 두는 과) ①

미래도시국에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미래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무
2. 도시디자인, 가로·광고물 정비 및 관리
3. 공동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4. 하천·구거·공유수면(구거), 하수관리
5.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6. 재난·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
7. 민방위
8. 청소,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및 쓰레기 감량
9.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무의 지도·감독

제8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1. ~ 6. (생략)

7. 청소,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및 쓰레기 감량

8. ~ 10. (생략)

제10조(교통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교통안전도시국에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미래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교통안전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1. ~ 4. (생략)

5.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6. 재난·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

7. 민방위

8. 도시디자인, 가로·광고물 정비 및 관리

9. 공동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 민원여권과-----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

-----.

② 교통건설국장-----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p>10. ~ 11. (생략)</p> <p>12. <u>하천·구거·공유수면·상수·하수·지하수</u> 및 온천 관리</p> <p>13. ~ 18. (생략)</p>	<p>10. ~ 11. (현행과 같음)</p> <p>12. <u>공유수면(바다)·지하수</u> ---- ----- --</p> <p>13. ~ 18. (현행과 같음)</p>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0
----------	------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 정원 변경(안 제2조)

○ 총정원 : 1,008명 ⇒ 1008명, 집행기관의 정원 : 990명 ⇒ 1,01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 변경(안 별표 3)

○ 총계 : 1,008 ⇒ 1,034, 일반직 계 : 1,007 ⇒ 1,033,

6급 이하 계 : 945 ⇒ 97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인사부서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5) 비용추계 : 908,613천원(구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8명”을 “1,0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90명”을 “1,01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034	-				
정무직	1	-				
구청장	1	1				
일반직	1,033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4	2	8	3	18
6급 이하	97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1,008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990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034명</u> -----,----- -----.</p> <p>1. ----- : <u>1,016명</u> 2. ----- : -----</p>

신 · 구조문대비표(참고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u>1,008</u>	-					총계	<u>1,034</u>	-				
정무직	1	-					정무직	1	-				
구청장	1	1					구청장	1	1				
일반직	<u>1,007</u>	-					일반직	<u>1,033</u>	-				
3급	1	1					3급	1	1				
4급	6	5	1	1			4급	7	5	1	1		
5급	55	24	2	8	3	18	5급	55	24	2	8	3	18
6급 이하	<u>945</u>	-					6급 이하	<u>970</u>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
일반직 공무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 미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인건비	908,613	908,613	908,613	908,613	908,613	4,543,06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08,613	908,613	908,613	908,613	908,613	4,543,065
민간							
기타							
합계		908,613	908,613	908,613	908,613	908,613	4,543,065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주사 김현조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산출내역	소요금액(원)
계	(1인당 연간 추가비용 × 인원)	908,612,960
4급 승진 증 1	8,945,760 × 1	8,945,760
5급 승진 증 1	8,449,250 × 1	8,449,250
6급 승진 증 7	3,301,880 × 7	23,113,160
7급 승진 증 5	1,950,480 × 5	9,752,400
8급 승진 증 4	1,478,620 × 4	5,914,480
8급 신규 증 9	35,615,900 × 9	320,543,100
9급 신규 증 17	31,287,930원 × 17	531,894,810

의안 번호	1089
----------	------

제243회 임시회
2019.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조정실소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미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의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국 산하 부서조정, 명칭변경, 분장사무 일부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안 제2조, 제3조, 제9조) : 미래도시국

나. 부서(단) 폐지(안 제2조, 제3조, 제6조) : 도시재생추진단

다. 국 명칭변경(안 제10조)

○ 교통안전도시국 → 교통건설국

라. 국 소관부서 조정(안 제8조(중전의 제9조), 제9조, 제10조)

○ 미래도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 미래도시국 이동

마. 국 분장사무 변경(안 제8조(중전의 제9조), 제9조, 제10조)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무, 도시디자인, 가로·광고물 정비 및 관리, 공동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하천·구거·공유수면(구거), 하수관리,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재난·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 청소,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및 쓰레기 감량에 관한 사무 → 미래도시국 이관

바. 부서(과) 명칭변경(안 제9조)

○ 도시재생추진단 → 도시재생과, 미래도시과 → 도시관리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인사부서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의 행정기구를 확대개편하고 국 산하 부서조정, 명칭변경, 분장사무 일부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에서 도시재생추진단이 삭제되고 미래도시국이 신설, 기존 교통안전도시국이 교통건설국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시재생과로, 미래도시과를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 소관 부서 조정으로 신설되는 미래도시국에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를 두고, 교통건설국에는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두었으며,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가 미래도시국으로 국 소관 부서 조정됨에 따라 해당부서 분장사무를 이관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50만 미만인 자치구에 5국 이하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우리구는 기존 4국에서 5국으로 새로 1개국 증설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국별 사무의 규모와 부서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끝.

【참고 법령 및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19. 4. 3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의안 번호	1090
----------	------

제243회 임시회
2019.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미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 정원 변경(안 제2조)

○ 총정원 : 1,008명 ⇒ 1008명, 집행기관의 정원 : 990명 ⇒ 1,01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 변경(안 별표 3)

○ 총계 : 1,008 ⇒ 1,034, 일반직 계 : 1,007 ⇒ 1,033,

6급 이하 계 : 945 ⇒ 97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인사부서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908,613천원(구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등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 안 제2조와 별표3에서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이 26명 증가한 것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전담인력 배치와 열린 도서관 운영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을 반영하여 증원한 것이며,
- 증원분야는 행정2, 사회복지13, 간호9, 환경1, 사서1명으로, 직급별 증원은 기준인건비 범위내 인력운영과 인건비 절감 등을 고려하고 직렬·직급별 정원비율과 승진년도를 감안하여 4급1, 6급6, 8급8, 9급13명 증원하고 7급2명 감소한 것이며,
- 인건비는 행정직 등 일반직 증원에 따른 구비 852백만원, 직급별 정원 변동(승진)에 따른 추가비용 56백만원 등 매년 909백만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되어 예산확보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참고 법령 및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기획조정실 자료》

○ 공무원 종류별 정원조정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비고
현 행	1008	1	1007	
조 정	1033	1	1033	
증 감	증26	-	증26	

○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조정 (단위 : 명) (※정무직 제외)

구 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급비율	현 행	100%	1%이내	7%이내	25%이내	31%이내	28%이내	8%이상
	기 존	1,007	7	55	248	277	266	154
정원	조 정	1,033	8	55	254	275	274	167
	증 감	26	1	-	6	△2	8	13

○ 총 소요비용(연간 소요액) (단위 : 원)

총계	신규	승진	비 고
908,612,960	852,437,910	56,175,050	-